

보도시점 (지 면) 5. 30.(목) 조간
(인터넷) 5. 29.(수) 12:00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사유가 6월 1일부터 8개로 대폭 확대
-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중간정산도 허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 (노령)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044-204-7859)
			주무관	유경진 (044-204-7861)



□ 제도 개요

-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07.9월 개시)
- (근거 및 운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납입 부금) 월 5~100만원 (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 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별도 만기 없음)
- (공제사유) ① 폐업, ② 사망, ③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④ 노령(60세이상 & 10년이상 가입),
* '24.6.1부터 공제사유 4종 추가 :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지급 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기준이율 : '24.2분기 기준 3.0%
- (기타 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양도·담보 금지)

□ 가입 현황

- '24.4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173만명, 공제부금 26조원